

재건축사업계약서

(송파구 오금로 57길 3-9 중앙빌라)

2018년 5월 10일

“갑” : 송파구 거여동 중앙빌라 재건축

“을” : 시공사 (주)두정종합건설, 시행사 (주)두 정

송파구 오금로 57길 3-9 중앙빌라 재건축사업 계약서

아래 사업의 사업 주체인 송파구 오금로 57길 3-9 중앙빌라 6세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와 시공사 (주)두정종합건설 / 시행대행사사 (주)두정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은 중앙빌라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내역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표지 포함 17페이지의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의 연합원과 “을”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- 아 래 -


1. 사업의 명칭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7길 3-9 중앙빌라 신축공사
2. 사업의 위치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7길 3-9
3. 사업부지 면적 : 210.5 m²
4. 사업의 내용 : 지하 층, 지상 1층 피로티포함 6층 1개동 세대
건폐율 49.92% 용적율 : 196.04%
건축연면적 약412.67m²
※ 본 도면은 건축가설계도면이므로 “갑”의 요구시 변경될 수도 있음.
5. 사업의 방법 : “갑”의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시설의 준공시 기준으로 대물변제 공사임.
6. 공사비 지급 방법 : 기성 공정율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한다.
7. 공사기간 : 착공신고일로부터 약 8개월로 한다.
(2018년 7월 21일 ~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하며, “갑”의 이주 지연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)
8. “갑”의 제공 면적은 사업설명회때에 제시된 건축허가 도면에 의거 연합원 세대간 정한 평형대로 무상 지급기로 한다.

9. “갑”과 “을”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·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,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.

10. 별첨서류 : 하단에 표기

2018년 5월 10일

“갑” 주 소 : 용파구 모감로지길 3-9, 중앙빌라
주민등록번호 :
상 호 :
성 명 : 김 안

“을”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
사업자등록번호 : 641 -
상 호 : (주)두정종합건설
대 표 이 사 : 임 
주 소 : 서울시 송파구
사업자등록번호 : 658 -
상 호 : (주)두정
대 표 이 사 : 우 